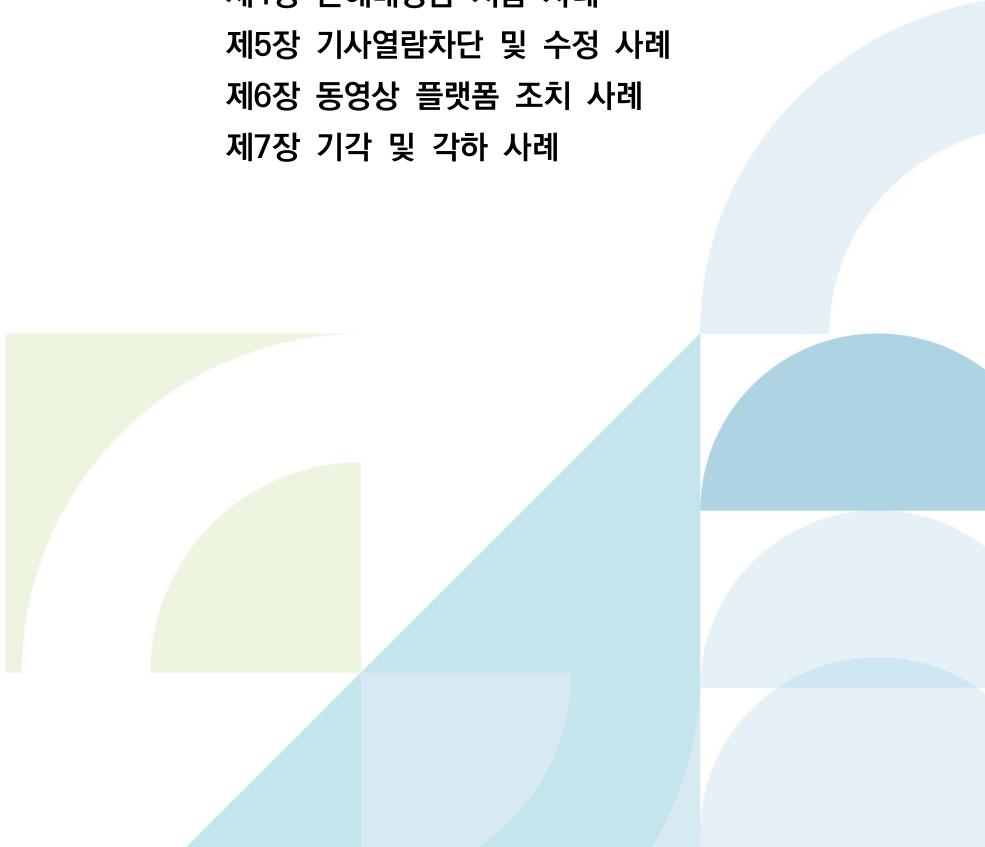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 제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정정보도 사례 1

2023서울조정276·277/278·27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언론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모두 지면에 게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고려, 지면에는 정정보도만 게재하고 인터넷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신문 소속이던 때에 회사의 승인 없이 인터넷 기사를 출고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고, 회사가 외압에 의해 보도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다가 해고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신청인이 해고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회사와 무관한 취재활동을 해왔고, 편집국장보다 연차가 높아 신청인의 기사를 게이트키퍼 할 사람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청인은 유튜브에서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원이 거짓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선정적이고 정파적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신문의 인터넷 기사는 '선 출고 후 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회사의 승인 없이 기사를 출고한 사실이 없고, 결론과 관련해서도 보도 관련 외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근부서 발령에 반발해 평소대로 외부 취재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개설 등과 관련해서도 신청인은 회사에 외부 활동 신고 후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직접 유튜브를 개설한 바 없으며, 퇴직 시까지 편집국장 직속 기자로서 국장의 데스크를 받아 기사를 출고했다고 했다.

신청인 운영 유튜브는 신문법상 언론사이며, 단독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선정적이고 정파적이라고 주장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지면 게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재부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면에는 정정보도를, 인터넷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모두 게재하는 합의를 제시했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의 ‘…………’보도는 한국언론의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 대표 강□□ 기자는 ○○신문 해직기자다. 과거 독재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직된 기자와 다르다. ‘사규위반’으로 징계받아 해고됐다.

발단은 20XX년 X월 강□□ 기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사를 ‘단독’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린 사건이다. **[중략]**

○○신문 강□□는 20XX년 여름 ◇◇◇ 전 ◇◇◇◇이 정계에 뛰어들 무렵 ‘◇◇◇ 검증’이라며 많은 의혹을 주장했다. ○○신문 편집국은 강□□의 주장을 대부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그러나 강□□는 ‘회사가 (◇◇◇과 유착한) ☆☆의 외압으로 보도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거듭되고 쌓여 20XX년 X월 해고됐다. **[중략]**

강□□는 이미 해고 3년 전인 20XX년부터 ‘▽▽▽▽ 유튜브 ▽▽▽▽▽▽’를 만들어 회사와 무관한 취재활동을 해왔다. **[중략]**

○○신문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의 유튜브 활동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강□□ 입장에선 ○○신문보다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자신이 확신하는 의혹을 마음대로 폭로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유튜브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파성이 강할수록, 선정적일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중략]**

강□□는 ◎◎그룹이 인수해 의욕적으로 투자하던 19XX년에 입사한 왕고참으로, 퇴사할 당시 편집국장보다 2년 선배였다. 강□□의 기사를 게이트키퍼 할 사람이 없었다. 열악한 전통매체 ○○신문은 기자 강□□를 잡을 힘이 없었고, 미디어의 신세계 유튜브는 정파성 기자에게 꿈의 무대를 제공했다. 그 결과 전국민이 <<<<의 거짓말에 농락당했다. <<<< 본인은 물론 남자친구와 변호사까지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일간신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가짜뉴스 시대, 진짜뉴스 읽기 5가지 팁”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 강□□ 기자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된 신문사로 선정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인터넷신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 가짜뉴스 시대, 진짜뉴스 읽기 5가지 팁”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 강□□ 기자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 매체에서 활동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는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된 신문사로 선정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20XX년 ▽▽▽▽▽를 설립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 정식으로 외부활동 신고를 하고 ▽▽▽▽▽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강□□ 기자는 “20XX년 정직 X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신문은 인터넷기사의 경우 ‘선 출고 후 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사를 출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직처분과도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 취재와 관련해 “제보자인 <<<<의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해 현재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지면(26면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주요 뉴스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위 섹션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2

2023경기조정66·67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사립 공공도서관의 정치적 편향 활동 의혹 보도와 관련, 정정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재단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시 예산 1억 640만 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사립 작은도서관 평균 지원액 1,380만 원 대비 7배 이상 높은 금액임에도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도에 신청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정치학교를 개교하여 도서관장이 강연을 진행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활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도서관 지원금 1억 640만 원은 야간 개관과 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1,380만 원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예산 재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시 지원금은 총 4,160만 원이라고 했다. 또한, 신청인은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복원을 위한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을 뿐 흑색선전을 한 바 없고, 시민정치학교는 임대료를 받고 장소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며, 도서관장 강연은 도서관의 역할을 소개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음에도 재단이 마치고 선거 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해 재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원금 재원의 구분과 강의 날짜 오기 부분 등은 정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서관이 ○○시의 예산 삭감에 반발해 흑색선전을 했다는 것과 정치적, 파당적 활동을 해왔다고 묘사한 부분은 ○○시 보도자료 및 시도의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분이며, 도서관 측의 입장을 취재하고자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정정보도를,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제1부 언론조정현황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법 판

조정대상보도

[전략] 올해 △△△△도서관에 ○○시의 예산 1억 640만 원이 지원된다. 사립 작은도서관(지원신청 도서관 50곳)에 도서관별로 평균 1,380만 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19년에는 1억 1천만 원, '20년에는 1억 4천만 원, '21년에는 1억 4,890만 원, '22년에는 1억 5,170만 원이 지원되었다. 더구나 △△△△도서관은 올해 추가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신청했다가 □□도 의회에서 부결되어 ○○시로 넘어왔다. [중략]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에서는 마치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늘어놓고 있다. [중략]

시에 따르면 △△△△도서관은 20XX년 제X회 전국지방 선거에 앞서 A당 소속 ◇◇◇ 국회의원과 함께 '☆☆ 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 의원과 ▽▽▽ 관장은 '정치와 ☆☆ 공동체'란 주제로 강연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도서관, 쟁점의 진실은 무엇인가?”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올해 △△△△도서관에 ○○시 예산 1억 640만 원이 지원되고, 추가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신청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되어 ○○시로 넘어왔으며, 작년까지 지원받았던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의 삭감에 관련하여 마치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흑색선전을 늘어놓았으며, 20XX년 제X회 전국 지방선거에 앞서 A당 소속 ◇◇◇ 국회의원과 함께 '☆☆ 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해 ◇ 의원과 ▽▽▽ 관장이 '정치와 ☆☆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XX년 ○○시가 △△△△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1억 640만 원이 아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16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4,16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20XX년 제X회 전국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학교를 개교한 것이 아니라 20XX년 XX월에 시민정치학교의 공간 대관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였으며, ▽▽▽ 관장이 강사로 참여한 강의 날짜는 20XX년 XX월 X일로 강의 제목도 보도와는 달리 '지역을 바꾸는 시민들의 실험실'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최초 24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24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3 2023서울조정2097·2098·209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지도교수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가 역으로 기소된 전공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기사의 일부는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구제 효과를 높인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도교수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고자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으로 고발당해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들(기사에서는 전문의로 표시됨)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는 해당 지도교수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기사에서 지도교수로 언급된 신청인은 제자들의 고발로 진행된 수사에서 세 차례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당시 제자들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였고, 신청인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들에게 다른 의사가 대신 집도한다고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날짜는 직위해제일 이전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판결과 무관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법원 판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반론을 수용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기사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보도를,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기사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30개 매체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 열람차단,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또는 취하(열람차단)로 종결되어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XX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XX일 확정했다. **[중략]**

대학병원 △△△과 전문의로 일하던 이들은 20XX년 X월 지도교수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XX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된 공소사실인 의료법 위반 혐의는 법정 고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후략]**

※ 일부 열람차단(삭제)된 부분은 조정대상보도에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지도교수 고발하며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대법 “무죄”> 관련
본문내용: 본 기사는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6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도하며, 지도교수인 B씨가 환자와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환자와 함께 A씨 등 의사 6명을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B씨는 맞고소한 결과 A씨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뉴스통신 홈페이지 <최신기사> 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최소 24시간 동안 <최신기사>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뉴스통신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뉴스통신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수정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정 후)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②>

(수정 전) 대학병원 △△△과 전문의로 일하던 이들은

(수정 후) 대학병원 △△△과 전공의로 일하던 이들은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③>

(수정 전) B씨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수정 후) B씨가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B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일부 열람차단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내용 중 < …… > 문장을 삭제한다.

정정보도 사례 4

2023충북조정40·41·42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직접 취재 없이 제3자 전언 등에 기초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사안과 관련,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 청사에서 1인 시위 중인 신청인의 시위행위를 제한해 달라며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이 1심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법원 판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취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입장을 직접 칭취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마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을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 대한 직접 취재가 아니라 군 공보관실의 보도자료 및 공무원들의 전언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인정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반영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에는 응하기 어렵고, 향후 취재·보도 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보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양측에 협의를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 X월 XX일 ○○지방법원 △△지원 제X민사부(판사 김□□)는 ◇◇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L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중략]

장☆☆ 노조위원장은 “20XX년 열린청사로 개방하면서 청사 내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으나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민원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L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지법 △△지원, “▽▽ ◇◇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L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L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L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표현은 L씨에 대한 개별 취재 없이 취재기자가 임의로 작성한 점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으며, 향후 취재와 보도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L씨는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본인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5

2023서울조정976·977/978·97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1. 단체, 2.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고등학교 강사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서로 다른 사건 관련 인터뷰 발언을 교차 배치하여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고,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에도 동일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고등학교 개교 자문을 맡았던 B대학교 전 총장의 딸 O 모 씨가 A학교 전문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A학교 교장은 B대학교 전 총장의 추천으로 교장 공모에 참여하여 교장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A학교 교장은 블라인드 테스트 등 엄격한 채용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으나, 해당 심사에 참여한 다른 심사위원은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A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전문강사 선발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공고한 바도 없고, 관련한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보도는 마치 채용 과정에 규정을 어긴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방송과 방송사 홈페이지,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정보도와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채용 심사위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공익성 및 진실성·상당성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임용에서 탈락한 강사와 채용 관계자의 발언은 보도 대상이 된 채용과 별개인 2021년 채용 과정과 관련한 일임에도 보도 대상인 2022년 절차에 관한 입장인 것처럼 문장이 배치되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 ② · ③ A 학교에서 이번에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 학교 자문을 맡았던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이 강사로 채용된 건데요. **[중략]**

△△교육청은 지난 2019년 A 학교 개교를 준비하면서 □□□ 전 B 대학교 총장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중략]**

이후 △△교육청은 A 학교 1회 교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 전 B 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 ☆☆대학교 ☆☆☆☆원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교가 문을 열었고, A학교 교장은 ‘▽▽▽ ▽▽’ 등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A 학교는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데, ‘▽▽▽ ▽▽’ 과목 강사로 ○ 모 강사가 채용됩니다.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입니다.

[중략]

A 학교 교장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테스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A 학교장: “제가 심사위원으로 면접 때 들어왔었지만 심사는 저와 외부 전문 심사위원분들이 모여서 엄정하게 근거를 갖춰서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강사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강사는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A 학교 강사 채용 탈락자: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들어오시고 저희 강사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1차 채용에서 저는 합격이 됐고 2차 채용 면접에서 저는 탈락했습니다.”] **[후략]**

④ · ⑤ · ⑥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이 A 학교 강사로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2년 A 학교 전문강사 채용 관계자였던 C 모 씨는 전 B 대학교 총장의 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 형식이 아닌 성명을 비롯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한편 A 학교 교장은 ○ 모 강사를 비롯한 모든 채용 과정은 전문가 입회하에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됐으며, 채용 공정성 훼손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 전 B 대학교 총장 딸, A 학교 강사 채용 ‘논란’」 기사 등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들에서 A 학교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등 채용 의혹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학교 교장은 2022년 ○ 모 강사의 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제1부 언론조정원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법

않았고, ○ 모 강사의 채용은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위 지침에는 강사 채용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A 학교 교장은 강사 채용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A학교 교장은 “자신은 개방형 공모 교장의 선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발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방송사 홈페이지 ‘<<’면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해당 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 섹션 기사목록(상단 5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 ②, ③, ⑤, ⑥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각 조정대상보도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배경화면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으로 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송출 영상은 해당 방송분의 인터넷 기사, 보도문 및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에도 위 송출 영상 링크 등을 포함하여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2장

반론보도론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론 게재 사례

반론보도 사례 1

2023강원조정17/18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지방자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가 강행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 보도 관련,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강행하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 등 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됨은 물론 광역지자체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할 경우 ○○군의 자체 권한인 지구단위계획만 적용되어 고층 건물 건축 및 위락시설의 인허가가 군 차원에서 가능하게 되는 등 향후 해변 난개발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 지자체는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 열람을 시행했으며, 공고기간 동안 34명의 주민이 난개발 우려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들에게 계획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20XX년 X월 X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변경안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 13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회에 설명한 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군 의회로부터 '이견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이와 동일하게 군계획위원회에도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신청인 지자체는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대상 지역은 2011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고 있는 이중규제 적용 지역으로,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이 불가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위락시설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관계없이 △△리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역에

한해 인허가가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높이는 4층 이하여야 해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인 지자체는 군관리계획의 변경 목적이 이중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확보에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행정 신뢰가 떨어지고 주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지자체가 계획 변경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일 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신청인 지자체가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미 ○○군 곳곳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부당하게 밟았다’는 보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현안을 연속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반론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변의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강행해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략]**

□□□□□도와 ○○군 등에 따르면 ○○군은 ‘◇◇◇◇ ○○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면 △△리 등에 지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달 XX일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도에도 이 같은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보고했다.

[중략]

특히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 중인 △△X리 주민들은 이 같은 군의 일방적인 계획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등의 건축에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광역지자체의 통제를 받지만 해제 시 ○○군의 자체 권한인 지구단위계획만 적용돼 향후 해변의 난개발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X리 주민들은 올 X월과 X월 두 차례에 걸쳐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 중이다. [후략]

③ · ④ [전략] ○○군은 ‘◇◇◇◇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리 일원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시키면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가 군 차원에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층 건물도 군 차원에서 맘대로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 개발’을 빌미로 바닷가 절경 주변에 20층 내외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게 된다. [중략]

타 시·군의 경우 난개발 억제에 정책적 무게를 두는 반면 ○○군은 오히려 외지자본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군 △△리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추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들에서 ○○군이 ‘◇◇◇◇ ○○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리 등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위락시설에 대한 인허가나 고층 건물 승인 등이 군차원에서 이루어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년 ○○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및 ○○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과정에서 주민 공람 의견을 보고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중첩규제 해소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추진 중이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지역인 ▽▽ 등 일대와 달리 △△리 일원은 계획관리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여전히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제약을 받게 되며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02면 우측 최상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③ 중 []와 동일한 크기 및 글자체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단, 상차 처리하여 다른 기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2 2023충북조정57/58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사수정)

지방자치단체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일부 시공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철거 관련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반론보도로 게재하고, 회사명은 원기사에서 익명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1급 발암물질 함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샤워장 및 간판 미설치, 안전띠 미지급, 보양을 하지 않은 슬레이트 방치, 작업 중 비계 해체 및 안전로프 미설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시공업체인 신청인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실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해체된 슬레이트는 하역 후 비닐 보양(포장)을 하였고, 작업 중에는 안전비계와 함께 분진막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수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제보자의 주장만을 사실처럼 보도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관공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조합해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보도하고자 노력했으며, 감독기관인 ○○군에도 연락을 취하는 등 사실 확인에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 작업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지점 ◇◇지청에 송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작업 규정 위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로 수용하고, 원기사에서 신청인 업체명은 익명 처리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군이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제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관내 소재 주택과 비주택에 설치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제거하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공업체가 석면 철거제거 작업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석면 분진 발생 예방과 농경지 등에 나뉘는 슬레이트 조각 방치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X월 (주)▽▽이 시공 중인 20XX년 ○○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권역 중 ◎◎읍 <◁로 XXX-X와 ◎◎읍 ▷>길 XXX번길 XX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샤워장 및 간판 미설치, 안전띠 미지급, 보양 없이 슬레이트 방치, 작업 중 아시바 해체 및 안전로프 미설치, 방진복 반 탈의 후 흡연 및 음료 섭취, 분진막 미설치, 슬레이트 발로 파손 등이 목격됐다.

이와 관련 증거를 첨부한 고발장이 지난 X월 XX일 △△지방노동청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접수됐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군, 슬레이트 철거 관리감독 엉망」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일부 시공업체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서 샤워장 및 간판 미설치, 보양 없이 슬레이트 방치, 작업 중 안전비계 해체 및 분진막 미설치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샤워실 설치의 제외될 수 있으며, 슬레이트는 해체한 상태에서 하역 후 비닐 보양(포장)을 완료하였고, 작업 중 안전비계와 함께 분진막을 설치했으며 고의로 슬레이트를 발로 파손한 적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종합(0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통상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실제로 지난 X월 (주)▽▽이 시공중인 20XX년 ○○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권역 중 ◎◎읍 <<로 XXX-X와 ◎◎읍 >>길 XXX번길 XX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수정 후) 실제로 지난 X월 A업체가 시공중인 20XX년 ○○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권역 중 ◎◎읍 내 슬레이트 철거제거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반론보도 사례 3

2023광주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미술협회의 리베이트성 후원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양 당사자 간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부제소 조항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자체 주최 미술 행사를 위탁 수행하는 지역미술협회가 작품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성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해당 협회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작품 제작비를 보조금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고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업체에게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작품 제작비를 높게 책정한 후 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타 공모전에 비해 제작비를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미술대전은 조례에 따라 후원 및 찬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사는 자발적인 후원금을 리베이트라고 표현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기술해 협회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조례에 따라 ○○시미술대전에 후원 및 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미술협회 총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찬조·기부금 항목이 별도 기술되어 있는 것에 반해, ○○시미술대전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유용 가능한 경상비로 후원금을 명시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이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우선 게재하되, 별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부제소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고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미술 행사인 ○○미술대전이 때아닌 보조금 리베이트 의혹이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시미술대전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 온 ○○시미술대전은 보조금 6천3백만 원 및 접수비 3천3백여만 원 등 1억 원 규모의 대형 행사이다.

그러나 보조금 수행단체인 △△△△이 20XX년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백만 원의 금액을 업체로부터 후원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논란을 피하려고 미술대전에 참여한 작품의 제작비 등을 보조금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별로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성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라며 “이게 바로 보조금 사업을 핑계로 참가자에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예술인들에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 관계자는 “일시 대규모 제작을 위해 업체를 수소문한 결과 □□ 업체가 적격이라 맡긴 것이며 후원은 자발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X년 기준 XX회째 내려오는 ○○시미술대전 조례 개정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시 미술대전 조례 제X조를 보면 “○○시가 주최하고 △△△△협회 ○○지부가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 내부 감사가 있긴 하나 상위기관인 ◇◇ 또한 사업의 정산 감독에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의 미술 관계자는 “정당한 후원금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미술대전 제작비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며 의혹에 대해 수궁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20XX○○미술대전’ 보조금 사업 리베이트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이 20XX년 미술대전에 참여한 작품의 제작비를 참가자 개인별로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하고,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리베이트성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 족자 제작비용은 타 공모전 대비 높은 값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 성격으로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족자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HOTNEWS 뉴스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4 2023경남조정19·20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종교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종교재단이 신도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실 등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 소재 △△사 신도들이 △△사 스님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면서, 피고소인들은 제보자 A 씨를 포함한 신도들에게 ‘천도재’, ‘원결천도재’, ‘공양비’, ‘기도비’, ‘불사금’ 등을 빙자해 수년간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종교재단은 보도에 언급된 사기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내역서가 대표고소인인 A 씨의 주도하에 작성되고, 제3자가 관여하면서 실제 사실과 달리 각색, 과장되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천도재, 원결천도재 등의 목적이 조상들에 대한 효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도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으며, A 씨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도 경찰의 보완수사까지 진행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청인 종교재단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자 A 씨의 일방적인 입장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소속 승려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신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측의 정리된 입장을 청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측 관계자들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 단체는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조정성립(반론보도)으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전략] 최근 △△사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이에 A씨는 관련 내용을 대자보를 통해 알리고 △△사 B씨, C씨 스님을 포함 6명을 상대로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중략]**

△△사 신도들 XX여 명의 대표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은 공모해 지난 20XX년 X월 XX일부터 20XX년 X월 XX일까지 고소인 A 씨에게 “전생의 원한이 많은 귀신들에 의해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잃을 것이며, 몸도 아플 테니 모든 것을 바쳐 ‘천도재’를 지내라”, “조상들이 죄업이 너무 많아 지옥에서 하늘로 천도시켜야 한다” 등을 이유로 모 스님이 고소인 A 씨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사의 계좌로 총 XX회에 걸쳐 합계 16억여 만 원과 또 다른 고소 1명은 XX회 14억여 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분원 등 약 5곳의 분원을 신축하면서 신도들로부터 천도재, 원결천도재, 공양비, 기도비, 불사금 등을 빙자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며 “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실제로 만났고 수행을 인정받아 ‘광명불’이라는 불호를 받았다며 부처님 10대 제자인 가섭존자, 자재통왕불 등으로 신격화하면서 전지전능한 초월적 존재, 지옥이나 천국으로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도들을 현혹시켰고, 본인들이 생불이 됐기에 가능하며 천도재 등을 지내야 조상들이 무서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세계로 보낼 수 있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하지만 제보자 A씨(외 1명)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7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신도들로부터 천도재, 원결천도재, 공양비, 기도비, 불사금 등으로 막대한 돈을 편취했다”는 요지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천도재, 원결천도재, 보살인가 등 관련은 종교행위로서 직접적·핵심적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뿐,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지법 원심 검사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사, 신도 상대 사기 의혹’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사 일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보살 인가를 받도록 유인하고 천도재 등을 이유로 금품을 편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한 1심 판결(○○지방법원, 20XX. X. X. 선고, 20XX고합XX)에서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 스님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또한 위 판결과 유사 내용으로 제기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사건도 20XX년 X월 ○○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진정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 측은 “△△△△ △△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 실천하는 정법교단으로서 신도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고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불사비, 기도비 등의 비용을 받은 것뿐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뉴스 초기화면 주요 기사 섹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48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단, 계약에 의한 기사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섹션에 한함)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 사례 1

2023서울조정1008·1009/1010·1011 각 추후·손배 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 (추후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열람차단)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아동을 학대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추후보도하고, 유감표명도 조정합의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재활센터의 원장은 다른 아동 학부모에게 피해 아동 가족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 앞서 청각장애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전제 사실을 누락하고, 피해 아동 할머니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여 신청인들의 명예와 센터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며 추후보도와 각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무죄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게재를 수용하였으며, 금전배상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사과를 원한다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는 무죄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게재와 피신청인 측의 유감표명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 다른 9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거나, 추후보도를 단독으로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추후보도, 열람차단,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또는 취하(추후보도, 열람차단)로 종결되어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재활센터 교사 4세 장애아동 폭행 혐의 무죄 선고

본문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아이의 손등을 때리고, 입술을 짹 누르는 등의 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무죄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XX년 X월 XX일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홈 > 사회 섹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추후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피신청인 유감표명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본 합의로써 유감을 표명한다.

열람차단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가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 한다.

추후보도 사례 2 2023부산조정14·15·16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 및 반론보도)

노동조합 대표에 입후보한 신청인이 과거 보조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적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성추행 무죄 판결과 신청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추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노동조합 지역본부 의장에 입후보한 A 씨가 이전 의장 재직 당시 시 보조금 1억 7,117만 원을 편취하고,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개인적으로 사용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후 A 씨는 횡령 피해액 중 1,740만 원을 시에 반납하고 3,456만 원을 노조 앞으로 변제 공탁하여 보석 결정을 받았으며, 향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A 씨는 몇 년 후 공탁금을 자신의 부인 계좌로 출금하여 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여직원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체포되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시 보조금 편취의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신청인의 95%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므로 보도 내용은 왜곡이라고 했다. 공탁금을 부인 계좌로 인출한 것도 의장단 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사항이며, 인출된 공탁금은 조직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이 된 사안으로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의장 선거에 악영향을 받았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할 의도는 없었으며 취재 요청 문자에 답변이 없어 반론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와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사를 구성하였으나 신청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재판 결과는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중재부는 기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등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성추행’ 등의 단어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의혹 보도 시에는 취재 대상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판결과 신청인 의견 일부를 반영한 추후 및 반론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지역본부 제XX대 의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X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중략]**

X일 ○○○○ △△본부 노조원과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 등에 따르면 A 후보는 의장 재직시절 직원 X명을 허위로 등록해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 20XX~20XX년 시 보조금 1억 7,117만 원을 편취했다. 또 해외연수 보조금 등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000여 만 원을 여행사 등에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20XX년 X월 징역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뒤 그는 횡령 피해액 중 1,740만 원을 시에 반납하고 3,456만 원을 노조 앞으로 변제공탁하는 것으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어 20XX년 X월 그는 걸어둔 공탁금을 출금해 자신의 부인 계좌로 빼돌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요죄, 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A 후보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재판을 받기도 했다. 피해 여직원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침입(현행법)으로 체포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A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수억 원 횡령에 성추행까지”...○○○○ △△ 의장 후보자 논란> 관련

본문내용: 올해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 △△지역본부 의장 선거 후보자인 A씨가 20XX~20XX년 의장 재직 시절 시보조금 1억 7,117만 원을 편취했으며, 20XX년에는 공탁금을 부인 계좌로 빼돌리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1억 7,117만 원 편취 관련 재판 결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관련 혐의들은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것이며, 공탁금은 ○○○○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적법하게 인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뉴스통신 홈페이지 △△·□□ 섹션에 추후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도문을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추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박스·음영·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추후보도 사례 3

2023서울조정2781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후속보도)

새총과 쇠구슬로 동료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신청인이 유죄판결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항소심 무죄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게재하여 취하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으로 직장 동료의 차량을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1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긴 했으나 해당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추후보도문 대신 무죄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취하로 종결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1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취하(추후보도, 후속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지법 형사4단독 △△△ 부장판사는 20XX년 X월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XX고단XXXX).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일 오전 XX시 XX분경 ○○시 □□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해 승용차의 앞 유리나 선루프를 파손해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판사는 피고인이 전문가용 새총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20XX년 X월경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한 점, 이후 한 교사에게 요청해 쇠구슬을 받아갔고, 차량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철(Fe) 성분이 검출된 점, 학교 옥상은 후관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고 당시 학교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파손 부위가 4군데라는 것을 학교에 알리기 전에 피고인은 한 교사에게 '파손 부위가 4군데이던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게재보도문

후속보도문

보도제목: ○○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본문내용: ○○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 부장판사, ☆☆☆·▽▽▽ 판사)는 20XX년 X월 XX일 □□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XX노XXXX).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그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일 오전 XX시 XX분경 해당 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해 승용차 앞 유리나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지방법원 20XX. X. X. 선고 20XX고단XXXX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도XXXXXX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새충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XX. X.경 새충을 구매하기는 했으나 그 새충은 자신의 처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버렸다'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네 주민 A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가 20XX. X. 이전에 새충을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아가 B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새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무렵 새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달리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새충을 들고 다니던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장소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새충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새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승용차의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과학교사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철(Fe)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다. 더욱이 미세증거 감정에서도 위 파편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이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의 성분과 동일한지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된 시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옥상 아래에 위치한 후관 3층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이고, 당시 옥상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의 계단 등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피고인이 옥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관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3층에서 내려오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사건 학교의 3층에는 5학년 교실, 연구실, 컴퓨터실, 상담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에 옥상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학교의 옥상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장소로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정되는 곳 및 그 인근 등에서 범행도구 등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동기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1

2023서울조정450·451·452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인터넷 보도 이후 신청인의 이의가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지면에 동일 내용을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B 시의원이 ○○시청 시정업무보고 과정에서 전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재채용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A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한 사유를 회신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내용증명을 받은 B 시의원은 A 씨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에 대한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드론을 이용한 옥외 광고물 점검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업무일지 작성 등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매뉴얼 작성을 계획 중에 있었으며, B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신청인의 퇴직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B 시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어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도 불이익이 있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의 인터넷 보도 이후 사실과 다른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면 보도까지 했다며 손해배상을 원했다. 중재부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피신청인 언론사는 금액이 조정된다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중재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시청 일반임기제 직원이었던 A 씨가 ○○시의원에게 개인정보법(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X일 B 시의원에 따르면, A 씨가 X월 XX일 건축주택국 시정업무보고 시 000의 채용을 막겠다 말했다고 000 채용 안 되는 게 이번 일을 해결하는 거다. 또한 채용을 시장님께 물어보겠다 등 의원님의 발언을 C 팀장을 통해 들었다며 의원님께서 20XX년 제X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한 000 채용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20XX년 X월 X일까지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시의원은 “실명이나 이니셜 등 아무것도 거론한 것이 없는데 개인정보법 운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시청 前 임기제직원, 채용 관련 부당한 ‘처사’…시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내」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 시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응시자 A 씨에 대해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씨는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B 시의원은 A 씨의 퇴사 이후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 씨는 “시정을 어지럽히거나 업무에 미흡·미진한 점은 없었다. 또한, 드론 점검은 전국 최초 사례로 20XX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시 정책홍보 및 방송사의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요청, ○○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알리고 확산시키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으며,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 점검 매뉴얼과 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고 20XX년도에 옥외광고물 안전전문가, 옥외광고센터와 협의하여 일지, 점검표 등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주간신문 2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 언론사는 20XX. X. XX. (X) 까지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2**2023서울조정1835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 (일부 열람차단, 손해배상 30만 원)

명시적 동의 없이 녹음된 신청인의 음성을 유튜브에 공개한 보도와 관련, 보도 내용 중 음성이 포함된 부분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도 △△ 사기분양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집단대출을 내준 은행의 관계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내보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나 녹취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음성변조 등의 처리가 미흡한 상태로 유튜브에 전화통화 내용과 신청인 음성이 공개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인터뷰 내용의 인용 동의를 받았고,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음성권은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할 권리로, 신청인은 인터뷰 내용의 인용에 동의한 것이지 음성이 공중에 전파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신청인의 음성 삭제 및 3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이런 가운데 □□□□은행은 수분양자에게 잔금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며 이자와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시공사가 이자를 상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행은 투자자들을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록시켰다. 투자자들은 잔금대출에 관한 약속서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은행 측은 연대보증인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닌 수분양자가 상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관계자는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신용 관리 대상자 등록된다”고 다 안내를 드렸다”며 “(시공사에도) 가압류를 다 걸었고 그다음에 채무 인수를 해달라 아니면 대위 변제 요청은 다 해놓은 상태다”고 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20XX. X. XX.(X) 24:00까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음성이 보도된 부분을 삭제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XX. X. XX.(X) 18:00까지 아래 신청인의 계좌로 3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3

2023서울조정2784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500만 원)

언론사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명인이 연루되어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유명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도와 함께 게재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사진 속 인물은 피의자가 아니라 동생인 자신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기사를 삭제하긴 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이 다른 인터넷 기사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 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이 양산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피의자에게 동생이 있는지 몰랐고, 피의자가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여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식별처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 신청인의 연락 후 피신청인 언론사가 즉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 점, 손해배상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5백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3개 매체의 기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각각 취하(기사수정),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손해배상(3백만 원)으로 피해가 구제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심리 중 타 사건에 병합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진취하하여 종결됨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본안심리 전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XX년 XX월 X일까지 아래 신청인의 계좌로 금 5,000,000원정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1 2023서울조정2626/2627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개인 간 법적 분쟁을 다룬 보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 관련 사안임을 감안하여 열람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혼 조정 중인 신청인의 남편이 신청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고, 두 달여간 딸을 만나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공모하여 신청인 남편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딸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남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고, 검찰도 피의사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어린 딸아이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과의 통화를 통해 신청인 남편이 이혼소송과 사문서위조 고소 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전략적으로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도를 편파적으로 했고, 특히 보도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상간남으로 칭하며 신청인과 폭행을 공모했다고 해 신청인을 ‘상간을 저지른 사람’,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상간남과 공모하여 남편을 허위고소한 사람’ 등으로 보이게 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면서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동영상플랫폼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매개된 조정대상보도도 열람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남편의 제보 문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성추행 혐의는 항고에 의한 재수사에서도 재차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신청인의 불륜 상대는 가정법원의 배상판결로 그 존재가

인정되었으며, 공모 혐의도 블랙박스 음성 등으로 정황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였으며, 신청인의 입장도 반영하였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재부는 본 건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우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②의 다시보기 영상이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포털 사이트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조정대상보도 ②의 VOD 서비스 중단을 통지함으로써 조정대상보도들이 노출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2 2023서울조정1688·1689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지방경찰청과 수사 대상인 병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이 열람차단을 제안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지조사를 받는 중인 ○○병원에 대해 △△경찰청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려 그렇지 않아도 해당 병원을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던 △△경찰청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입건 후에는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수사 인력을 1명만 배치하였으며,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반려되었음에도 보완 수사나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이 이어졌고, 내사 진행 사항을 병원 측이 알고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사건 정보가 누설된 정황도 있어 △△경찰청과 병원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본권 10권 5,500페이지, 별권 12권에 이를 만큼 수사를 면밀히 진행했으며, 압수수색영장도 여러 차례 신청하여 계좌와 통신 영장은 발부 받았으나 현장 영장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불청구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 소관부서 변경은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것으로 해당 수사팀은 4명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언론사가 수사의 중립성, 직무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신청인 기관과 수사관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치밀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완 수사와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고, 본 사안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의혹을 보도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사 종결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비공개로 제출한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보도 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해당 부분은 정정을 하고 그 외는 신청인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수사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하다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신청인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동일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본 사건 신청인인 경찰청 외에 신청인 소속 경찰관 또한 별개의 조정을 신청했고, 본 사건이 열람차단으로 조정 성립됨에 따라 해당 사건도 피해가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 X. X.(X) 정오까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3 2023전북조정1·2·3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수정)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정식 스포츠 선수임에도 신청인의 의상과 기술을 선정적이라고 표현한 보도와 관련,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영상 캡처 사진을 삭제하고, '선정적'이라고 한 보도 제목과 본문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이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을 비판하면서, 폴 웨어를 입고 폴댄스를 추는 장면은 과거 주류 광고가 연상될 정도로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소녀의 나이가 11세로, 폴댄스 의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인공이 미성년자여서 제작 의도에 뒷말이 나온다면 “민망하다”는 취지의 지역민 인터뷰를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현재 △△도 대표로 많은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폴스포츠협회 등록 선수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해당 스포츠에 맞는 의상을 입고 폴스포츠 규정집에 따른 기술을 선보이는 장면을 주류 광고에 빗대어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홍보 영상이 삭제된 상태임에도 부정적 보도에 신청인 영상이 노출되어 신상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내용은 영상에 등장한 신청인이나 스포츠 종목 자체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세금을 들여 만든 홍보물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신청인 초상을 비식별 처리하여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논란에 대한 △△도 사과 브리핑을 바탕으로 부가 설명을 충실히 반영한 후속 보도를 이미 게재한 바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한 점, 신청인을 배려하지 못한 일부 표현이 있는 점 등이 아쉽다고 지적했고, 피신청인도 △△도의 홍보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2차 심리기일이 지정되었고, 이후 양 당사자가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한 영상 캡처 사진의 삭제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부제목 및 본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 보도

[전략] 폴웨어를 입은 소녀는 그 기둥에서 춤 실력을 뽐낸다. 폴댄스가 끝나고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자막이 나온다.

언뜻 과거 주류 광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슬아슬한 이 영상은 놀랍게도 △△ ○○군 공식 유튜브에 있는 지역 관광 홍보 광고다. **[중략]**

영상에 등장하는 이 소녀의 나이는 당시 11살. **[중략]**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도가 지난 연말에 만들었다. **[중략]**

□□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볼 때도 민망한데 이게 ◇◇◇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후략]**

※ 조정대상 보도 중 신청인 초상이 노출된 사진 및 일부 보도내용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사항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수정된 보도문을 전송하여 게재하도록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문을 수정 내용이 반영된 기사로 수정한다.

기사수정

<조정대상 보도 주제목 수정>

(수정 전) 보름달과 폴댄스... 미성년 등장하는 선정적 홍보 영상 논란

(수정 후) 미성년 등장하는 △△도의 홍보 영상 논란

<조정대상 보도 부제목 수정>

(수정 전) △△도가 ◇◇◇ 알릴 목적 제작.. “비판 예상돼 영상 삭제”

(수정 후) ◇◇◇ 알릴 목적 제작.. “논란 예상돼 삭제”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언뜻 과거 주류 광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슬아슬한 이 영상은 놀랍게도 △△ ○○군 공식 유튜브에 있는 지역 관광 홍보 광고다

(수정 후) 이 영상은 △△ ○○군 공식 유튜브에 있는 지역 관광 홍보 광고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②>

(수정 전) □□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볼 때도 민망한데 이게 ◇◇◇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수정 후) □□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일부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중 ‘……’와 조정대상보도에 첨부된 신청인 초상이 나온 사진을 삭제한다.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4 2023충북조정16·17/18·1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기사수정, 일부 열람차단)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협의를 토대로 중재부가 기사수정과 일부 열람차단을 직권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 씨가 약 9만5천700㎡에 이르는 임야에 ‘○○○ ○○○○○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했으며, 관할 관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A 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와 복구설계서 제출을 통보한 상태이고 검찰 고발도 예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A씨가 허가도 받지 않은 ‘○○○ ○○○○○원’을 개발한다며 투자를 권유해 역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 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임야의 면적은 약 6만9천244㎡이며, 임야 내에서 진행된 공사는 20XX년 X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향후 침수피해 방지 목적이었고, 공사 진행 당시 관할 관청이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으며, 오히려 수해 복구를 통해 산림을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보도에서 언급한 ‘○○○ ○○○○○원’ 건설의 경우, ‘○○○ ○○○○○원’의 배후지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야 개발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수해 복구 외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바 없고, △△시가 신청인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한 사항도 수해 복구 시 사용했던 임시가설물 관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은 제보자가 신청인 사업체의 창업 초기에 자금을 출자하고 상임이사로 재직한 적은 있으나 투자를 통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종용하거나 사기행위를 벌인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일부 사진은 보도내용과 무관한 사진이라며 보도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등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제1부 언론조정원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부록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자가 진술과 함께 제공한 자료와 현장 확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고, 신청인이 최초 통화 이후 연락을 회피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취재기자와의 직접 통화 이후에도 신청인 친지가 기자에게 연락하여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어떤 사업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알렸으며, 제보자가 신청인에게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는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일부 자료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 정정보도 또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보도문 게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재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당사자 간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3일 이내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지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 사항을 통지함에 따라 중재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협의 문안을 토대로 기사수정 및 일부 열람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 △△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A씨(60대)가 아들(20대)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 ○○○○○원' 개발 목적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A씨(이하)의 행동으로 해당 지역 전체 임야면적 약 9만5천700㎡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X월 XX일 A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묘지를 정리한 것이고, 지저분한 산림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으로 수일 내에 함께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일대를 '○○○ ○○○○○○원'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중략]**

이 마을 이장은 **[중략]** 그분 산의 일부 나무가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면사무소에 피해목 신고를 하고 아릅드리 참나무 100여 개를 벌목한 적은 있다고 했다. **[후략]**

②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 ○○○○○○원' 개발 목적으로 A씨(60대)가 아들(20대)과 마을이장 등과 함께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A씨(이하)의 행동으로 해당 지역 전체 임야면적 약 9만5천700㎡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X월 XX일 A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묘지를 정리한 것이고, 지저분한 산림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으로 수일 내에 함께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일대를 '○○○ ○○○○○○원'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중략]**

이 마을 이장은 **[중략]** 그분 산의 일부 나무가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면사무소에 피해목 신고를 하고 아릅드리 참나무 100여 개를 벌목한 적은 있다고 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삭제)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② 주제목 수정>

(수정 전) △△ ◇◇면 산림 무단훼손 A씨... 엄벌해야...

(수정 후) △△ ◇◇면 산림 무단훼손 A씨... 복구명령 받아

<조정대상보도 ②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 ○○○○○○원' 개발 목적으로 A씨(60대)가 아들(20대), 이장 등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수정 후) □□ △△시 ◇◇면 일대 임야 약 6만9천244㎡ 중 일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지난 20XX년부터 A씨(60대)가 아들(20대), 이장 등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 산림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조정대상보도 ② 본문 수정 ㉔>

(수정 전) 전체 임야면적 약 9만5천700㎡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 후) 전체 임야면적 약 6만9천244㎡ 중 일부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보도 ② 본문 수정 ㉕>

(수정 전)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XX번지 임야 약 9만5천700㎡ 일대를 ‘○○○ ○○○○○원’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수정 후)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XX년 □□ △△시 ◇◇면 임야 약 6만9천244㎡ 일대를 개발을 한다며 조감도를 보여주고,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년간 6억여 원을 손해 봤다고 했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 및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첫 번째 자료사진(이미지 및 설명 포함)에서 「‘○○○ ○○○○○원’」을 모두 삭제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세 번째 및 네 번째 자료사진(이미지 및 설명 포함)을 모두 삭제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 등 6개 문장을 모두 삭제한다.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1 2023서울조정731·732/733·734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알림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집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 더보기란에 강제동원 주체를 명확히 하는 알림보도를 게재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집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신청인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제목에 신청인의 이름을 적시하여 신청인이 주최, 참여한 집회에 신청인 또는 주최 측이 그룹홈 거주 아동들을 강제동원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또한, 보도 영상에 '극우집회 강제 동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함으로써 신청인 주최 집회에 마치 폭력이 난무한 것처럼 폄훼하였고, 댓글에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다수 게재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한 그룹홈의 아동학대 의혹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보도 제목의 수정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보도 제목의 수정뿐 아니라 '강제동원'과 '극우집회'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을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보도 내용이 신청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제목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시한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알림보도 게재와 함께 유튜브 댓글에 의한 피해의

회복 조치로 유튜브 채널의 해당 영상 하단에도 알립보도를 고정하여 배치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앵커] 이 그룹홈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집회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원장은 그러나 이들이 외출하고 싶어해서, 원해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리포트] X년 전 ○○○○○○ △△△ 목사가 개최한 대통령 퇴진 시위. [중략] 추운 날씨에 혼자 셔츠 바람으로 태극기를 든 소년이 눈길을 끄니다. 그룹홈 □ 원장이 보호하던 아동입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알립보도문

보도제목: [알립] 「‘△△△ 집회’ 강제동원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보도는 △△△ 목사측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 한 그룹홈 원장이 아이들을 강제동원 한 것에 대한 공익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 섹션 ‘▽▽▽▽▽’면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알립보도문의 제목을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립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알립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영상에도 알립보도문을 해당 영상 더보기란 최상단에 고정으로 배치하여 다시 게재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2 2023서울조정654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처리결과	조정성립(동영상 플랫폼 조치)

자영업자의 고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유튜브에서는 신청인이 언급된 내용을 삭제하고, OTT에서는 출연자의 주장을 알리는 자막을 추가하는 식으로 플랫폼별 조치사항을 다르게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부부의 고충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강아지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담배 냄새가 나고 기침을 한다며 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한 견주가 있었으며, 원장 부부는 흡연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1년 반 후 견주가 인터넷에 흡연 관련 글을 올렸다고 했다. 이에 억울했던 원장 부부가 해당 견주를 고소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되었고, 흡연한 것으로 의심받은 원장은 흡연 검사까지 받았으나 관련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견주’로 보도된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사실확인 절차 없이 신청인이 마치 명확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원장 부부에게 흡연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화면으로 제시된 검사 결과는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니라 방송 시점에 실시한 검사 결과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원장 부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방송으로 인해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자로 매도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출연자의 직업적, 개인적 고민을 공유하는 내용을 방송했을 뿐 출연자와 신청인 간 법적 공방을 다룬 것이 아니라며, 신청인의 정정청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중재부는 해당 영상이 신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보도가 아니고, 형식도 일반 뉴스가 아닌 오락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유튜브 영상 중 일부에 자막을 삽입하거나 댓글란 상단에 신청인이

원하는 문구를 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청인은 영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삭제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튜브는 부분 삭제가 가능하지만 OTT 등에 제공되는 영상물은 계약 관계상 삭제가 어려울 수 있어 신청인이 원하는 자막을 영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유튜브 영상에는 신청인 관련 사건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고, OTT 영상에는 자막을 추가하는 합의를 제시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원장 A : ‘유치원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난다. 유치원을 가면 기침을 하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남편이고. 저희는 일단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담배를 피우지를 않았고, 직원도 흡연자를 뽑지 않아요.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흡연을 한다고. 그래서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1년 반 있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니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양쪽에서 다 자료부분이나 증거자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자 : 흐지부지 됐구나.]

[원장 B : 제가 그 (흡연 여부) 검사도 받았어요. 흡연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0’이 나왔어요.]

[진행자 : 아예 간접 흡연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원장 B : 제 주변 자체가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후략]

조정성립사항

동영상 플랫폼 조치(일부 열람차단 및 기사수정)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까지 조정대상보도의 영상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 유튜브 영상 기준	8:47경 ~ 9:57경 (신청인 사례 언급 부분)	해당 영상 부분 삭제

- 피신청인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종합유선방송(CATV), OTT(△△△, □□, ◇◇◇◇)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 조정대상보도의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영상을 기존 것에서 수정된 영상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단, 계약 내용상 위 수정된 영상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된 영상으로 대체한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9:05 ~9:12	음성	원장A: 저희는 일단은 지금까지 7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담배를 피지를 않았고 직원도 흡연자를 뽑지 않아요.	
	자막	흡연은/절대 NO 직원도 흡연자로 뽑지 않아요	※출연자의 주장입니다. (자막 추가)
9:49	영상	(의사 소견서 이미지 표출)	※출연자의 주장입니다. (자막 추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3 2023서울조정269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매체유형	유튜브 채널
처리결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과정에 대검찰청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유튜브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유튜브 댓글란에도 반론보도문을 고정 게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피신청인 소속 언론인이 처음에는 경찰조사에서 불기소되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이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경찰서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한 후 추가 수사를 한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 대검으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지시받거나,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경찰 조직 및 수사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 입장은 반론 형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보도물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원보도문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해당 영상 댓글에도 반론보도문을 고정 게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제1부 언론조정원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판부

조정대상보도

[전략] [진행자 : 어제 △△△ 이□□ 기자를 제가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중략]

[진행자 : 경찰은 뭐 불기소 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사건인데, 어제 송치가 됐어요.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언론보도에서는 경찰이 이런저런 혐의가 있어서 송치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아닙니다.] [중략]

[진행자 : 이거는 얼마 전에 대검이 지시를 한 거예요.] [중략]

[진행자 : 검찰이 가져간 거예요.] [중략]

[진행자 : 처음부터 오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중략]

[진행자 : 이렇게 저렇게 답을 정해 놓고. 이걸 수사가 아니죠.]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김◇◇ 명예훼손 혐의 송치관련 경찰 입장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에서 전 △△△ 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재수사하던 ☆☆☆☆경찰서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은 대검이 답을 정해 놓고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송치결정을 한 것이다.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거나 검찰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 김◇◇이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하단 댓글란의 최상단에 고정 댓글로 반론보도문을 게시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4 2023서울조정2348·2349·2350/2351·2352·235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고위공무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풍력발전사업자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등과 사고모임을 가진 후 사업이 이례적으로 빨리 추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고위공무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방송사 홈페이지와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 △△도 해상풍력사업 관련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경영컨설턴트 한 모 씨가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 및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을 초대,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있으며, 해당 모임에 참여한 기업인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김 모 씨이고, 고위공무원은 관련 부처 차관과 □□□□실의 정책 총괄 부서 선임행정관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해당 모임은 김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둔 시기에 개최되었으며, 김 씨의 사업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난 후 2년여 만에 주요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등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상풍력사업은 □□□□실 내 타부서 소관으로 신청인 소속 부서 담당이 아니었으며, 해당 모임은 해역이용 협의가 완료된 이후 개최된 것으로 모임 후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자료화면에 사용된 사진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고, 신청인은 모임에 참석할 당시 김 모 씨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 명함, 직책, 성명 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공직사회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실 공직자의 신분으로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주최자와의 관계, 모임 참석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국가수사본부가 해당 모임에서 공직자들이 제공받은 향응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가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의혹 제기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에 대한 다소 과장된 의혹 설정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신청인이 공인인 점,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인 점, 신청인의 반론을 듣고자 했으나 신청인이 자리를 피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해 조정안을 협의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고위공직자인 신청인의 비실명화 요구와 정정보도 요구는 수용 불가하나 반론보도를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재부는 방송사 홈페이지와 함께 유튜브 채널의 조정대상보도들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합의안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 ② · ⑥ · ⑦ **[전략]**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한 컨설턴트의 주선으로 수상한 접대 모임을 해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 ☆☆☆☆부는 이 자리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닌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략]**

김 씨가 풍력단지 개발을 본격화하던 시기, 관련 고위공무원 2명이 각각 김 씨와 함께 한 씨의 초대를 받았습니니다.

당시 박▽▽ ◎◎부 차관과 <<<<<< 정책을 총괄하는 >>> □□□□실 김소소 선임행정관입니다.

모임은 김 씨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둔 때와 해역이용협약이 진행되던 때 각각 열렸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업자를 접촉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의 사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난 뒤, 2년여 만에 주요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차관은 모임엔 참석했지만 김 씨는 기억에 없다고 했고, 현 ♥♥부 대변인인 김 전 행정관은 답을 피했습니다. **[후략]**

③ · ④ · ⑤ 직무 관련성이 분명한 공직자와 기업인 사이에 만일 향응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한 씨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기업인과 공직자의 인맥들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해 봤더니 수조 원대 해상풍력 사업이 튀어나왔다. **[중략]**
 그 뒤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20XX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난 뒤 모든 주요 인허가 절차는 2년여 만에 끝났다. **[중략]**
 특히 각종 인허가 가운데 가장 까다롭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석 달 만에 통과했다. **[중략]**
 김 씨는 한 씨가 주선한 자리에도 여섯 차례 초대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이 되는 것은 20XX년 X월 XX일. 공교롭게도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와 겹친다. 이날 한 일식당 만찬 초대 명단에는 김 씨 외에도 박▽▽ 당시 ◎◎부 차관이 있었다. 몇 달 뒤 열린 또 다른 모임에도 김 씨는 누군가와 함께 초대된다. <<<<<< 정책을 총괄하는 >>> □□□□실로 파견 가 있던 ♡♡부 출신 김소소 선임행정관이었다.
 해상풍력업자 김 씨가 박 전 차관과 초대됐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 통보를 받고 본안 접수를 준비할 시기였다. 김 행정관이 초대된 때는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이다. 한 씨가 주선한 자리에서 김 씨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김 씨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현재 ♡♡♡♡부 대변인인 김 전 행정관은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어렵게 만난 김 대변인. 당시 모임에 한 참석자가 건네받았다는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①

보도제목: [반론보도] <일사천리 해상풍력 사업 뒤엔 ‘수상한 사교 모임’ 있었다>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 프로그램과 <▲▲▲▲ 2부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 ①·②·⑥·⑦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은 >>>에서 <<<<<< 정책을 총괄하지 않았고, ♡♡부는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 의견을 X월 XX일 모임이 있기 전인 X월 X일 이미 회신하였으며, 당시 모임에서도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가 오간 기억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②

보도제목: [반론보도] <사교와 로비, 그들은 왜 형제가 되었나>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 ③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은 >>>에서 <<<<<< 정책을 총괄하지 않았고, ♡♡부는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 의견을 X월 XX일 모임이 있기 전인 X월

X일 이미 회신하였으며, 당시 모임에서도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가 오간 기억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①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①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시사>■■■■■ ■ 섹션과 시사교양>최신VOD>다시보기 섹션에 반론보도문 ②를 자막으로 제작하여 조정대상보도 ④, ⑤ 조정대상영상 방송 말미에 삽입한 후 재업로드한다. 단, 반론보도문 ②의 제목과 본문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시청자들이 멘트를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②, ⑦의 각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①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④, ⑤의 각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②를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 ◆◆◆◆>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영상에도 영상 말미에 반론보도문 ①을 자막처리하여 재업로드하고, 해당 영상 더보기란 최상단에 반론보도문 ①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다시 게재한다.
- <◆◆◆ ◆◆◆◆>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영상에도 영상 말미에 반론보도문 ②를 자막처리하여 재업로드하고, 해당 영상 더보기란 최상단에 반론보도문 ②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다시 게재한다.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기각 및 각하 사례 1 2023서울조정1853·185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언론사가 게재한 인터뷰 영상에 신청인과 소송 중인 사람이 등장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과 관련, 신청인이 특정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도심에서 발생한 흥기난동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방문한 시민들을 인터뷰해 해당 영상을 관련 보도와 함께 게재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자신과 소송 중인 사람이 보도 영상에 등장해 여론을 조작하였으며, 이러한 기만행위가 신청인과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정보도와 1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이 지명되거나 특정되지 않았고, 보도내용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추모객 : 젊으신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후략]

기각 및 각하 사례 2 2023서울조정1994·1995·1996/1997·1998

각 정정·반론·손배,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각하

신청인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 납치 및 사망사건 배경에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 코인은 브로커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 코인의 발행사 대표인 신청인은 코인 상장 과정에 브로커가 연루된 바 없고, 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신청인은 오히려 △△△△ 코인이 시세조종 피해자이며, 최근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한 혐의로 구속된 가상자산거래소 □□□의 전(前) 직원이 △△△△ 코인 상장 시기에 □□□에서 근무했을 뿐 △△△△ 코인 상장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이 사건 조정신청은 2023년 8월 23일자로 접수되었고 신청서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2023년 8월 1일로 기재되었으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는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사를 모아 회사 내부망에 올릴 것을 지시한' 날짜는 5월 3일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사업차 외국으로 출국한 날짜가 4월 2일이고, 내부망 아이디 접속 실패나 경찰조사 대응 등으로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기사를 확인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재부는 4월 5일부터 14일 사이 다수의 언론에서 신청인 회사 발행 코인이 관련되었다는 범죄 사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된 점, 소속 직원이 코인 관련 보도를 신청인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한 이를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여 기사들을 모아 내부 공유망에 올릴 것을

제1부 언론조정위원회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별첨

지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내부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웹 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소와 무관하게 해당 보도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들어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0개 매체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정정·손배, 반론·손배, 또는 단독으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대부분의 사건은 신청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으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1건의 경우 취하(기사수정)로 종결되어 피해가 구제됨

조정대상보도

① · ② · ③ [전략] ◇◇ ○○ 납치·살인 사건의 범행 배경에 가상자산인 ‘△△△△’ 코인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알려진 △△△△ 코인은 상장 과정에서도 브로커가 연루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 코인은 지난 20XX년 XX월 XX일 가상자산 거래소 □□□에 상장됐다.

[중략]

하지만 상장 시기부터 관련 브로커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점에 따르면 코인상장 브로커인 고 모 씨는 △△△△ 등 29개 코인을 상장시켜준 대가로 □□□ 관계자들에게 9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제)를 받고 있다. [후략]